

행정기관명

수신자
(경유)
제 목 압류 통지

귀하(귀사)가 납부할 국세의 금액이 확정된 후에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아래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(근거: 「국세징수법」 제31조제3항).

납세자	성명 (상호)	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
	주소 (사업장)			
압류재산의 표시				
압류일자		년 월 일		
압류조서작성일자		년 월 일		
압류사유		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		
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(단위: 원)				
세목코드	발행번호	연도·기분	내국세	농어촌특별세
세 목	납부기한	계	교육세	가 산 금

다만, 「국세징수법」 제3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압류일자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국세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합니다. 끝.

발신명 의 직인

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○○○과 담당자 ○○○(전화:)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기안자	직위(직급) 서명	검토자	직위(직급)서명	결재권자	직위 (직급)서명
협조자					
시행	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	접수	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		
우	주소	/ 홈페이지 주소			
전화()	전송()	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		/ 공개구분	